

제239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2022. 09. 30.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2호로 2022년 9월 18일 유승용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9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 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 체계를 보호하며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탄소중립의 총칙(안 제1조 ~ 제7조)
- 나.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안 제8조 ~ 제11조)
- 다.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12조 ~ 제14조)
- 라.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안 제15조 ~ 제19조)

- 마.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안 제20조 ~ 제22조)
- 바. 기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폐지
(안 부칙 제2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다. 입법예고 (2022. 9. 14. ~ 9. 19.)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시행 2022. 3. 25.)됨에 따라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은
 - 조례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이고 총 5장과 22개의 본칙 조문 및 3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었음.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탄소중립을 위한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탄소중립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과 계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행정의 일관성과 연계성을 위해 환경정책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 안 제15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신·재생 에너지 전환, 녹색건축물의 활성화, 녹색교통의 활성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 탄소흡수원 확대 등 구체적인 제도·시책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20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을 위해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탄소중립이행책임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부칙 제2조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시행 2022. 3. 25.)됨에 따라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이 폐지되어, 이와 관련된 현행 조례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의 폐지를 규정하였음.

○ 검토 결과

- 가속화되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으로 국제사회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고 의무이행을 독려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에서도 국제사회의 흐름에 맞춰 2020년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탄소중립 정책 관련 계획 및 시책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시행(2022. 3. 25.)하고 있음.
- “기후위기 대응” 관련 타 자치구 입법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7개 자치구¹⁾가 조례를 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기후위기 대응 관련 조례 제정: 강북구, 구로구, 도봉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동구, 은평구 (7개 자치구)

참 고 자 료

1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2.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3.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되는 온실가스의 양에서 온실가스 흡수의 양을 상쇄한 순배출량이 영(零)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4. “탄소중립 사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거나 없애고 기후위기 적응 및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정·기술·제도 등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원활히 달성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와 부작용을 예방 및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말한다.
5.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₂),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6.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7. “온실가스 감축”이란 기후변화를 완화 또는 지연시키기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흡수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8. “온실가스 흡수”란 토지이용, 토지이용의 변화 및 임업활동 등에 의하여 대기로부터 온실가스가 제거되는 것을 말한다.
9.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10. “에너지 전환”이란 에너지의 생산, 전달, 소비에 이르는 시스템 전반을 기후위기 대응(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및 관련 기반의 구축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환경성·안전성·에너지안보·지속가능성을 추구하도록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11. “기후위기 적응”이란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역량과 회복력을 높이는 등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12. “기후정의”란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계층별 책임이 다름을 인정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 기후변화의 책임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부담과 녹색성장의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어 사회적·경제적 및 세대 간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13.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기업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
14.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

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15. “녹색경제”란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경제를 말한다.

16. “녹색기술”이란 기후변화대응 기술(「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후변화대응 기술을 말한다),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신·재생에너지 기술, 자원순환(「자원순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원순환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 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17. “녹색산업”이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에너지의 사용을 대체하고 에너지와 자원 사용의 효율을 높이며,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의 생산과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이루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사회·교육·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 개선과 재정투자, 시설 및 시스템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국제협상의 동향과 주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분석하여 면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사업자 및 국민이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에 따라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현상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영향 예측 등을 추진하고, 국민과 사업자에게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며, 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책적·기술적·재정적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등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시·군·구 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국가기본계획, 시·도계획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군·구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각각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본다.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시·군·구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이를 환경

부장관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시·군·구계획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정부는 시·군·구계획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군·구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지원시책의 마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지방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제3항(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2항, 제14조제2항 및 제40조제2항·제4항에 따른 심의 또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40조(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시행)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기후위기적응대책과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대책(이하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경우 시·도지사는 이를 환경부

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제출받은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을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에게,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장관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방기후위기적응대책의 수립·시행 및 변경,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① 탄소중립 사회로의 원활한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요건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